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62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책무) 오산시장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"지역대책본부"라한다)의본부장(이하"지역대책본부장"이라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"지원단"이라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- 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지원단의 단장은 「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오산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"자원봉사센터"라 한다)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 다만,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석일 경우 사무국장이 단장이 된다.
 -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되다.
 - 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
 - 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 - 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 - 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- 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

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 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- 1. 상황총괄팀
- 2. 모집·배치팀
- 3. 활동관리팀
- 4. 활동지원팀
-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-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**제7조(지원단의 설치)**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 - 3. 자원봉사자의 규모
 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 - 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- 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 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 -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 -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-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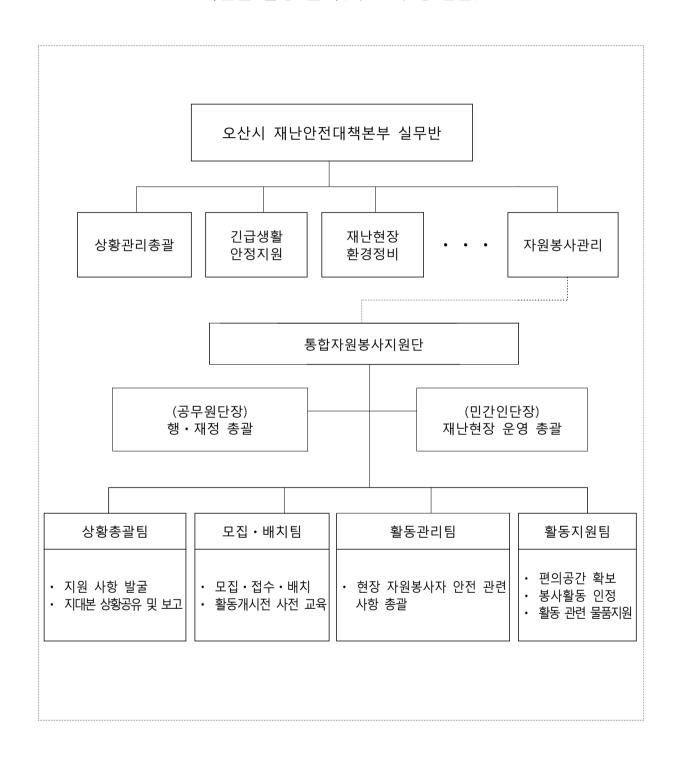
- 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 -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 공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팀명	직위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(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부서장)	▶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	민간인 (오산시 자원봉사센터장)	
상황총괄팀	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부서 팀장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	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부서 팀원	 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▶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모집 • 배치 팀	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 팀장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
	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 팀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지원
활동관리팀	오산시 안전정책과 재난관리팀장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
활동지원팀	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담당 팀장	 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